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134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0. 2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 선고 2021가소202731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92,8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은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6. 4.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9. 7. 14.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D 등 4명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1/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2020.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2020. 5.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2020. 6. 18. 관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년 3, 4, 5월분 월 급여 5,400,000원(= 1,800,000원 × 3개월)과 퇴직금 7,342,585원 합계 12,742,5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위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2021. 2. 19. 배당기일에서 최우선 임금채권자로 12,742,585원 전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배당금 중 원고의 지분(1/8)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와 갑 제4, 7, 8, 12, 1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예금 계좌에서 피고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인 2020. 3.부터 2020. 5.까지 사이에도 피고 앞으로 월 급여가 이체된 사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의 예금 계좌에서 위 기간 중의 월 급여 및 퇴직소득에 대한 피고의 4대 보험료가 이체되어 납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사망 후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피고에 대한 2019. 11.분부터 2020. 1.분까지 3개월분의 급여가 연체되다가 2020. 2. 25.부터 다시 매월 25일경에 1개월분씩의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연체된 2019. 11분의 급여에서부터 순차 충당함에 따라 2020. 5.말 퇴직할 당시에는 여전히 퇴직 직전 3개월분이 연체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3개월분의 급여와 퇴직소득이 지급된 것을 전제로 피고의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된 것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피고의 보험자격 유지 또는 업무처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사전에 사업자 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도록 처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2020. 3.부터 2020. 5.까지 3개월분의 월 급여와 퇴직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을 허위의 체불임금확인서 등에 근거한 이중배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정인, 판사 김창형, 판사 당우증